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내신성적 반영지침



2021. 3.

경기도교육청

C ontents 차 례

■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I. 목 적	1
II. 방 침	1
III.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3
IV. 영역별 전형 관리	4
V. 2022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18

■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

I. 목 적	21
II. 방 침	21
III. 교과활동상황 성적 산출 방법	23
IV. 출결상황 성적 반영	28
V. 봉사활동 실적 성적 반영	29
VI. 학교활동 실적 성적 반영	30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I

목적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합리성·타당성·다양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도를 높인다.

II

방침

1.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전형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81조)
2. 일반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모두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으로 선발한다.
3.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특성화학과의 입학전형 방법은 학교장의 희망에 따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82조)
4.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교육감 지정)·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별 전형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5. 입학전형에 관한 교육감 자문 및 심의 기구로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6. 모든 고등학교는 학교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외부위원 포함 권장)
7.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8.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은 별도 산출식에 따른다.

9. 이중지원은 절대 금하며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지도한다.

- 전기학교는 전형 시기와 관계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다.
 - 단, 마이스터고에 불합격한 경우 직업계열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⑦항)
 - 또한, 직업계열 특성화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에 불합격한 경우 직업계열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⑧항)
 - 일반고 특성화학과는 직업계열 특성화고의 지원방법을 준용한다.
- * 직업계열 특성화고: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예-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가사실업 등)
- ** 직업계열 특성화고 일반전형: 직업계열 특성화고의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
-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전기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 1개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 전·후기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이중지원 사례

-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경기도 내 전기학교 지원자가 불합격하여 타 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 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한자가 경기도 내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지원자가 타 시·도 소재 특성화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등

10.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지정 취소 시에는 전환된 학교 유형의 전형계획에 따른다.

11. 학교 소재지의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이 심각(2,3단계)하거나 학생 안전과 직결된 방역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련 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입학전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요소는 내신 등으로 최소화한다.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지침 등에 따른 집합 전형 대체 방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학교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시험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3. 2022학년도 고입 전형 관리 업무는 본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III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구분	업무 내용		일정	
전기 학교	■ 경기북과학고(과학고)	원서접수	2021.08.23.(월)~08.30.(월)	
		전형기간(소집면접)	2021.11.19.(금)~11.20.(토)	
		합격자 발표	2021.12.03.(금)	
	■ 마이스터고	원서접수	2021.10.18.(월)~10.21.(목)	
		전형기간	2021.10.25.(월)~10.29.(금)	
		합격자 발표	2021.11.02.(화)	
	■ 예술고	원서접수	2021.10.18.(월)~10.21.(목)	
		전형기간	2021.10.25.(월)~10.29.(금)	
		합격자 발표	2021.11.02.(화)	
	■ 체육고	원서접수	2021.10.26.(화)~10.29.(금)	
		전형기간	2021.11.01.(월)~11.05.(금)	
		합격자 발표	2021.11.15.(월)	
후기 학교	■ 특성화고 ■ 일반고 특성화학과	[특별전형] 원서접수	2021.11.05.(금)~11.09.(화)	
		[특별전형] 전형기간	2021.11.11.(목)~11.12.(금)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2021.11.15.(월)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11.22.(월)~11.23.(화)	
		[일반전형] 전형기간	2021.11.24.(수)~11.25.(목)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	2021.11.26.(금)	
	[추가모집] ■ 전기학교 미달교	원서접수	2021.12.01.(수)~12.02.(목)	
		합격자 발표	2021.12.03.(금)	
	평준화지역 정시모집 ■ 일반고 ■ 자율형 공립고	원서접수	2021.12.09.(목)~12.15.(수)	
		배정 예정자 발표	2022.01.07.(금)	
		배정 학교 발표	2022.01.28.(금)	
		등록 기간	2022.02.03.(목)~02.07.(월)	
		추가합격자 배정 및 발표	2022.02.14.(월)	
		추가 배정학교 등록	2022.02.14.(월)~02.16.(수)	
후기 학교	비평준화지역 정시모집 ■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원서접수	2021.12.09.(목)~12.15.(수)	
		합격자 발표	2021.12.20.(월)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교 ■ 외국어고 ■ 국제고 ■ 자율형 사립고	1단계	원서접수	2021.12.09.(목)~12.15.(수)
			전형기간	2021.12.16.(목)~12.17.(금)
			합격자 발표	2021.12.18.(토)
		2단계	서류접수	2021.12.20.(월)~12.21.(화)
			전형기간	2021.12.22.(수)~12.31.(금)
			합격자 발표	2022.01.03.(월)
	[추가 모집] ■ 전기학교 미달교 ■ 비평준화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미달교 ■ 외고, 국제고, 자사고 미달교	원서접수	2022.01.10.(월)~01.13.(목)	
		합격자 발표	2022.01.17.(월)	

- * 공군항공과학고(마이스터고) 응시자는 특성화고를 제외한 타 전기학교(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타 마이스터고 등)에 지원 불가
- * 이 전형일정은 교육부 지침 및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변동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합격자 발표는 정해진 발표일 이내에 공지될 수 있음
- * 대학수학능력시험일: 2021.11.18.(목)

1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1) 전형 관리

- 가)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학생 선발은 다음 사항에 의거 선발·배정한다.
- (1)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학군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모집 정원만큼 선발한다.
 - (2) 학생 배정은 다음 방식에 의한다.
 - (가) 수원학군, 성남학군, 안양권학군, 부천학군, 고양학군, 광명학군, 안산학군, 의정부학군, 용인학군 공히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에 의거 실시한다.
 - (나) 내신성적에 의거하여 학군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모집 정원만큼 선발한 다음, 학생의 학군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와 구역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다.
 - (다) 지원자는 학군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와 구역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를 별도로 작성하여 지원한다.
 - 나) 평준화지역 내 교육감 배정 비적용 일반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전형 방법과 일정에 따른다.

2) 전형 방법

- 가) 평준화지역[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 신입생 선발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평준화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 나) 지원 자격(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4)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 위 (2)~(4)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 지원의 제한

- ① 평준화지역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당해 평준화지역에 지원하여야 하고, 위 (2)~(4)항의 대상자 중 평준화지역 거주자는 당해 평준화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평준화지역 내 거주자 또는 평준화지역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비평준화지역 소재 고등학교 응시자, 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형 사립고 응시자, 체육특기자는 예외로 한다.
- ② 2022학년도 특수목적고(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특성화고 등 전기학교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 제①항)
- ③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학군내·구역내 1지망을 외고, 국제고, 자사고로 하며, 2지망부터 일반고 지망 순위를 작성한다.

- 다) 체육특기자 선발은 교육감 소속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평준화 지역별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제①항, 제③항)
-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선발 배정한다.
- 마) 전문의의 확인을 받은 **지체부자유자(희귀·난치 질환 포함)**의 후기고등학교 배정은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제②항, 제③항)
- 바) 귀국학생(특례입학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2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1) 전형 관리

- 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정시모집 시기에 학교별로 전형한다.

2) 전형 방법

- 가) 당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 나) 지원 자격
 -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4)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 위 (2)~(4)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 * 지원의 제한

2022학년도 특수목적고(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특성화고 등 전기학교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 제①항)
- 다) 체육특기자는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별로 해당 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 마) 귀국학생(특례입학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 바) 특기·적성교육 영역을 특별히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 정원의 10% 범위 내(체육특기자 5% 포함)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①항)

1) 전형 관리

- 가) 일반 특성화고와 일반고 특성화학과 중 추천입학제를 희망하는 학교는 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일반 특성화고 및 일반고 특성화학과 추천입학제는 학교별로 실시한다.
- 다) 추천입학제 적용학교는 다음 선발 방법에 의거 학교장이 모집할 수 있다.
 - 내신성적에 의한 선발
 - 내신성적 및 적성검사 병행 실시

2) 전형 방법

- 가) 내신성적 반영은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준한다.
- 나)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별도의 전형 방법을 정하여 일반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 다) 추천입학제 지원 자격은 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지원 자격과 동일하다.
- 라) 체육특기자는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별로 해당 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마)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 바) 귀국학생(특례입학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 사) 특기·적성교육 영역을 특별히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 정원의 10% 범위 내(체육특기자 5% 포함)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①항)
- 아)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 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2)
- 자) 학교 소재지의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이 심각(2,3단계)하거나 학생 안전과 직결된 방역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 요소는 최소화하되, 부득이하게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지침 등에 따른 집합 전형 대체 방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특성화고등학교(교육감 지정)

1) 전형 관리

- 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2) 전형 방법

- 가) 전형 방법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 반영한다.
 - * 단,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란 학교별 중간 내신을 산출하는 시기를 의미하며, 그 기간 내에 단위 학교가 실시한 모든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 등)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100%로 환산하여 정함.
- 다)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라)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마)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별도의 전형 방법을 정하여 **일반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 바) 모집 단위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다.
 - 사)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 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2)
- 아) 기타 전형 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자) 학교 소재지의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이 심각(2,3단계)하거나 학생 안전과 직결된 방역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 요소는 최소화하되, 부득이하게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지침 등에 따른 집합 전형 대체 방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형 관리

- 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2) 전형 방법

- 가)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 전형 방법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1단계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첨으로 선발한다.
- 나)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은 금지한다.
- 다)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은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는다.
- 라) 학교별 필기고사와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 능력에 대한 질문 등)은 금지한다.
- 마)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까지로 하며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 편차를 제외한 성취도 수준을 활용한다. 내신 반영 과목, 반영 대상 학년, 내신과 면접의 반영 비율, 내신성적 산출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 바) 면접은 학생별로 개별 면접을 실시한다. (집단 면접 불가)
 - * 면접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포함한 평가 금지
 - * 1단계에서는 해당 교과 내신성적 및 출결점수 외의 기타점수 반영 금지
- 사)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 아) 기타 전형 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자) 학교 소재지의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이 심각(2,3단계)하거나 학생 안전과 직결된 방역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면접·설기 등의 집합 전형 요소는 최소화하되, 부득이하게 면접·설기 등의 집합 전형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지침 등에 따른 집합 전형 대체 방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학교 소재지의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이 심각(2,3단계)하거나 학생 안전과 직결된 방역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 요소는 최소화하되, 부득이하게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지침 등에 따른 집합 전형 대체 방안 및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가) 전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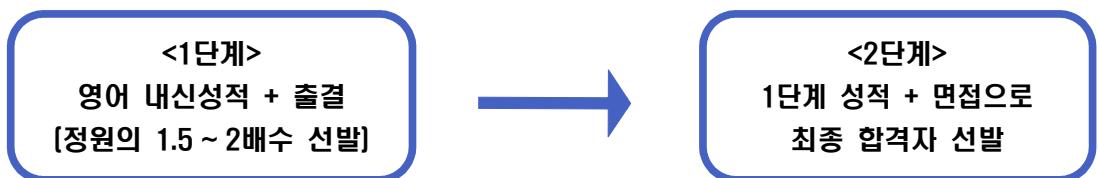
- (1)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나) 전형 방법

- (1)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 ※ 외국어고등학교는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다.
- (가)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지원하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 (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핵심인성요소를 평가한다.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 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선행학습 유발요인 배제
- (다)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심사한다.
 - 면접은 자기소개서의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자기주도학습 과정,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과 인성 영역(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실적,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실시
 - 입학전형위원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입학담당관 및 입학전형위원과 본부 진행요원으로 구성
 - 입학전형위원의 면접조 구성
 - 학교 위촉 입학전형위원 2인 이상(교내 교사 또는 외부위원 위촉)
 - ※ 입학업무담당자 위촉 배제
 - ※ 외국어 전공 입학전형위원 1인 이상 위촉 권장
 - 도교육청 위촉(타학교 위촉위원 포함) 입학전형위원 1인 이상

(라) 학교별 필기고사와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능력에 대한 질문 등)은 금지한다.

(2)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1단계 :‘영어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로 모집 정원의 1.5~2배수 선발

-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식 :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시 자동 계산

$$\text{영어 내신성적} = \text{중 2, 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 영어 내신성적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성취도 수준 반영

-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국어와 사회 교과 성취도 수준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반영함

3학년 2학기 국어 → 3학년 2학기 사회 → 3학년 1학기 국어 → 3학년 1학기 사회 →
2학년 2학기 국어 → 2학년 2학기 사회 → 2학년 1학기 국어 → 2학년 1학기 사회

* 사회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

- 중학교 2, 3학년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수

성취도 수준	A	B	C	D	E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경우, 성적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수준이 없는 경우는 수, 우, 미, 양, 가를 활용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도 수준 부여)]

- 출결 상황 산출 방식

$$\text{출결} = -(\text{미인정결석 일수} \times \text{가중치}^*) \quad * \text{ 가중치는 학교별 자율결정}$$

- 외국인, 특례입학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다른 전형자료 및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2단계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으로 선발

- 면접 점수 산출 방식

면접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인성 영역

- * 면접은 학생별 개별 면접임 (집단 면접 불가)
- * 면접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포함한 평가 금지
- * 1단계에서는 해당교과 내신성적 및 출결점수 외의 기타점수 반영 금지

- (다) 모집 단위는 경기도 내로 한다. (단, 타 시·도 중 2022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라) 기타 전형 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2) 과학고등학교(경기북과학고)

가) 전형 관리

- (1)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나) 전형 방법

- (1) 2022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모집 정원의 100%를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포함)
※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 (2)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 변형된 형태의 질문평가와 중학교 교육 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은 금지한다.
- (3) 교과지식이나 올림피아드(KMO 등), 교내·외 각종 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등은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는다.
- (4) 내신성적은 성취평가제로 산출된 수학·과학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
※ 과목별 성취도와 수강자 수만 반영하고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미반영
- (5) 내신성적 반영 학기, 과목별 비중, 내신성적 산출방법, 내신성적·서류평가·면접평가 결과의 반영 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 (6) 모집 단위는 경기도 내로 한다.
- (7) 기타 전형 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참고 사항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불가(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2020.11.17, 교육부)

3) 예술고등학교

가) 전형 관리

- (1)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나) 전형 방법

- (1)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2)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1학기 학기말 성적까지로** 하고,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실적은 **3학년 9월 말까지로** 한다.
- (3)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4) 모집 단위는 전국으로 할 수 있다.
- (5) 기타 전형 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4) 체육고등학교

가) 전형 관리

- (1)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나) 전형 방법

- (1)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2)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1학기 학기말 성적까지로** 하고,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실적은 **3학년 9월 말까지로** 한다.
- (3)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4) 모집 단위는 전국으로 할 수 있다.
- (5) 기타 전형 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가) 전형 관리

- (1)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나) 전형 방법

- (1) 전형 방법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3)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1학기 학기말 성적까지로 하고,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실적은 3학년 9월 말까지로 한다.
- (4)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5) 모집 단위, 방법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 (6)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 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2)
- (7) 학교별 전형요항에 따라 모집 정원의 5%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한다.

7**전기학교 추가모집 [2021.12월 실시]****1) 전형 관리**

- 가) 전기학교의 추가모집은 학교장의 희망에 따라 전형요항에 명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에 한하여 실시한다.
- 나) 추가모집 지원 자격은 학교별 지원 자격자 중 전기학교에 불합격한 자와 전기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2) 전형 방법

내신성적에 의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별 내신성적 기준을 전형요항에 명시한다.

8**추가모집 [2022.1월 실시]****1) 전형 관리**

- 가)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중 모집 정원 미달 학교는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단, 전형요항은 정시모집 시 승인 받은 것에 준하여 실시하며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
- 나) 지원 자격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지원 조건과 동일하나, 2022학년도 고입 전형에 응시 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 다) 추가모집에서도 모집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정원 내 결원 범위의 신입생을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6조, 제92조)

2) 전형 방법

- 가) 추가모집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까지 반영한 내신성적으로 사정하여 선발한다.
- 나) 내신성적 반영은 경기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따른다.

9**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전형****1) 지원 자격**

2021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전가족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2021년 이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

* 2021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실시: 2021.4.10.(토)

2) 선발(배정) 방법**가) 학교장 전형교**

교육감이 승인한 『2021학년도 입학전형요항』을 기준으로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일자까지 추가전형을 실시한다.

나) 교육감 전형교

내신성적에 의거하여 평준화지역 학군의 학교별 모집정원의 1%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사)에 해당하는 인원을 합산한 인원만큼 구역별로 배정예정자(합격자)를 선발한 후 전산 추첨 배정한다. 단, 정시모집에서 탈락자가 발생한 학군의 경우 검정고시 환산점이 해당 학군 정시모집 커트라인(합격점)보다 낮은 경우는 지원 불가

10**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선발**

- 1)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학교는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별도로 선발 하며, 일반 학생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모집 인원에 포함하여 정원 내로 선발하되, 교육지원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탈락자에 한해 모집 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 외로 별도로 선발한다. (일반 학생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 2)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선발은 학군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별도로 선발한다.
- 3) 일반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수만큼 일반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다.

11

특례입학대상자 선발

- 1)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1호~4호 해당자

구분		자격요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2) 특례입학대상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단, 제1호, 제4호 대상자는 정원 내로 선발함)

12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 1)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입학전형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한다.
- 2) 교육청은 학교별 입학전형영향평가에 대해 심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과학교 등

1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가.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교육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
-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
- ⑥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나.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소년·소녀 가장(형제·자매 포함)
- ② 조손가정 학생
-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
-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다. 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 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단,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21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⑦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등

3. 사회통합전형 단계별 전형 방법

3. 사회통합전형 단계별 전형 방법

가. 1단계(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의 1.5배~2배수 선발)

- ①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의 1.5배~2배수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 ②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의 1.5배~2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를 선발한다.
- ③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전형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
(학과별 전형교는 일반전형 동일학과로 전환 가능)

나. 2단계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을 준용한다.

- ①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60%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 ②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

다.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 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4

기타

4. 기타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기준증원소득 160%)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기준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

I 목적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도모하고, 공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고등학교 입학 적격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한다.

II 방침

1. 이 지침은 경기도 내 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와 특성화고등학교 중 추천입학제(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에 적용된다.
2. 그 외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내신성적 기준안을 마련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되,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3.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 실적 20점, 학교활동(수상실적 및 자치회 임원활동) 실적 10점, 총 200점으로 산출한다.
4. 자유학년제 시행 학년의 교과활동상황 성적은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5. 내신성적의 반영기준과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내신성적 반영기준과 시기]

반영기준	적용대상	반영시기
봉사활동	공통	3학년 10월 말까지
학교활동 (수상실적 및 자치회 임원활동)	공통	3학년 10월 말까지
출결상황	공통	3학년 10월 말까지
교과활동상황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 단,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란 학교별 중간 내신을 산출하는 시기를 의미하며, 그 기간 내에 단위학교가 실시한 모든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 등)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100%로 환산하여 정함
	일반고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까지

⇒ 단, 졸업자의 3학년 내신성적(봉사활동, 학교활동, 출결상황, 교과활동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전체 학년의 것을 반영한다.

<표-1> 영역별 내신성적 반영비율 및 점수

구분 (반영비율)	교과활동상황(75%)			비교과활동상황(25%)			비고 (100%)
	일반교과(60%)		체육·예술 교과 (15%)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2학년 (30%)	3학년 (30%)		전 학년 (10%)	전 학년 (10%)	전 학년 (5%)	
반영 점수	60점	60점	30점	20점	20점	10점	200점

6.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은 별도 산출식에 따른다.

7. 일반학교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특수학교는 이수 성적을 그대로 적용한다. 단, 특수학교 학생 중 산출된 내신성적이 없을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8.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9. 내신성적 산출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시스템(SATP)의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II

교과활동상황 성적 산출 방법

적용 기준

- 교과활동상황 성적은 성취평가제를 적용한 학기당 이수 교과목의 과목별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에 의한 점수를 반영한다.
- 교과활동상황 성적에서 일반교과는 과목별 성취도(A-B-C-D-E),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체육·예술 교과는 과목별 성취도(A-B-C)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일반교과의 반영 비율은 80%로 하며, 체육·예술 교과는 20%로 한다.

<표-2> 학년·교과별 교과활동상황 성적 산출법(150점 만점)

구분	학년	학기	기본 점수	계산 공식	총점	반영 비율
일반 교과	2학년	1학기	10점	$10 +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합}}{\text{과목수}} \times 2 + F \left(\frac{\text{이수과목 총점} - \text{과목평균 합}}{\text{과목 표준편차 합}} \right) \times 10$	60점 만점	40%
		2학기	10점	$10 +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합}}{\text{과목수}} \times 2 + F \left(\frac{\text{이수과목 총점} - \text{과목평균 합}}{\text{과목 표준편차 합}} \right) \times 10$		
	3학년	1학기	10점	$10 +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합}}{\text{과목수}} \times 2 + F \left(\frac{\text{이수과목 총점} - \text{과목평균 합}}{\text{과목 표준편차 합}} \right) \times 10$	60점 만점	40%
		2학기	10점	$10 +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합}}{\text{과목수}} \times 2 + F \left(\frac{\text{이수과목 총점} - \text{과목평균 합}}{\text{과목 표준편차 합}} \right) \times 10$		
체육·예술 교과	2,3학년	10점		$10 + 20 \times \frac{3 \times a + 2 \times b + 1 \times c}{3 \times (a + b + c)}$	30점 만점	20%

* 일반교과는 성취도를 A=5, B=4, C=3, D=2, E=1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체육·예술 교과의 경우 a는 A의 개수, b는 B의 개수, c는 C의 개수이다.

- | | |
|---------------------------------------|------------------------------|
| • 이수과목 총점(X) = 이수과목 원점수의 합 | • 과목 평균합(m) = 이수과목 평균의 합 |
| • 과목 표준편차합(σ) = 이수과목 표준편차의 합 | |

$$* Z = \frac{X-m}{\sigma} = \frac{\text{이수과목 총점} - \text{과목평균 합}}{\text{과목 표준편차 합}} \text{이고}$$

Z 의 값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단, $Z < 0$ 일 때는 $|Z|$ 의 값을 반올림한 후 마이너스(-)를 붙인다.

※ $F(z)$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이고, $F(z)$ 의 함수값은 소수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여덟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F(z) = \int_{-\infty}^z \frac{1}{\sqrt{2\pi}} e^{-\frac{t^2}{2}} dt, \quad 0 \leq F(z) \leq 1$$

3. 교과활동상황 성적의 기본점수는 150점 중 50점이며, 일반교과와 체육·예술 교과로 구분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4. 학기별 점수 계산 결과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5. 교과활동상황 성적 반영은 2, 3학년 성적을 반영한다.(단, 특성화고는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까지 반영한다.)
6.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가 없는 일반교과는 교과활동상황 성적 산출대상에서 제외 한다.

예시) 2학년 1학기 성적이 다음과 같을 때 일반교과 교과활동상황 성적 산출

구분	국어	도덕	수학	영어	한문
성취도	A	B	C	B	A
원점수	90	85	72	83	93
과목평균	81.3	72.7	56.4	65.3	64.6
과목표준편차	13.2	21.7	23.5	18.4	23.8

- 1) 성취도 평균점수 산출
→ A:2과목, B:2과목, C:1과목
→ $(2 \times 5 + 2 \times 4 + 1 \times 3) / 5 = 4.2$
- 2) 편차점수 산출
→ 이수과목 총점(X) = $90 + 85 + 72 + 83 + 93 = 423$
→ 과목평균 합(m) = $81.3 + 72.7 + 56.4 + 65.3 + 64.6 = 340.3$
→ 과목표준편차 합(σ) = $13.2 + 21.7 + 23.5 + 18.4 + 23.8 = 100.6$
→ $Z = (X-m)/\sigma = 0.82$
→ $F(z) = F(0.82) = 0.79389195$
- 3) 2학년 1학기 내신점수 산출
 $\Rightarrow 10 + 4.2 \times 2 + 0.79389195 \times 10 = 26.33891950$
따라서 2학년 1학기 일반교과 교과활동상황 성적은 26.339

유의 사항

- 다음 1항~11항의 내용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시스템(SATP) 내신성적 산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도 이 원칙에 준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성적은 2, 3학년 과목별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를 입력한다.
 2. 학기 중 중도 전입자로 학생의 성적이 일부 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다르거나 동일 교과 미이수로 중점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개별적으로 교과를 이수한 경우
 - 가. 학년 내 1, 2학기의 성적 중 다른 학생과 과목이 다르거나 중복 이수한 경우에 과목별 편제에 구애받지 않고 과목별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가 있는 경우는 모두 적용한다.
 - 나. 이수한 일반교과목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과목별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가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3. 재취학, 편입학 등으로 일부 학기 또는 학년의 교과성적이 한 과목도 없는 경우
(다음의 가, 나, 다는 우선 순위임)
 - 가. 학년 내 1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 2학기 성적으로, 2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 1학기 성적으로 대체한다.
 - 나. 학년 내 1, 2학기 성적이 모두 없을 경우 차상위 학년을 기준으로 학기별로 대체한다.
 - 다. 학년 내 1, 2학기 성적이 모두 없고 차상위 학년도 없을 경우, 차하위 학년을 기준으로 학기별로 대체한다.
 4. 졸업(예정)자의 일반교과 성적이 과목별 석차로 되어 있는 학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은 성취평가제를 적용한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산출하며 대체 방법은 ‘유의사항 3’의 방법으로 한다.
 5. 일반교과가 과목별 석차로 되어 있으며 체육·예술 교과 성적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되어 있는 졸업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 가. 성취도 부여

일반교과		
평어		성취도
수	→	A
우	→	B
미	→	C
양	→	D
가	→	E

체육·예술교과		
평가단계		성취도
우수	→	A
보통	→	B
미흡	→	C

나. 일반교과의 평어와 석차를 활용하여 과목별 원점수 부여

평어		환산점수(T)	기준점수
수	→	$100 \times \left(1 - \frac{\text{석차}}{\text{수강자수}} \right)$	$T < 90$ 이면 90점
우	→		$T < 80$ 이면 80점, $T \geq 90$ 이면 89점
미	→		$T < 70$ 이면 70점, $T \geq 80$ 이면 79점
양	→		$T < 60$ 이면 60점, $T \geq 70$ 이면 69점
가	→		$T \geq 60$ 이면 59점

* 환산점수 $T = 100 \times \{1 - (\text{석차}/\text{수강자수})\}$ 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과목별 환산점수를 해당 학생의 과목별 원점수로 부여하고, 환산점수(T)가 평어 범위에 없는 경우에는 평어에 해당하는 기준점수를 부여함

예시1) 평어가 ‘수’이고 $T \geq 90$ 이면 환산점수(T)를 원점수로 부여하고

평어가 ‘수’이고 $T < 90$ 이면 기준점수 90점을 원점수로 부여한다.

예시2) 평어가 ‘우’이고 $80 \leq T < 90$ 이면 환산점수(T)를 원점수로 부여하고

평어가 ‘우’이고 $T \geq 90$ 이면 기준점수 89점을 원점수로 부여하고

평어가 ‘우’이고 $T < 80$ 이면 기준점수 80점을 원점수로 부여한다.

예시3) 평어가 ‘가’이고 $T \geq 60$ 이면 기준점수 59점을 원점수로 부여하고

평어가 ‘가’이고 $T < 60$ 이면 환산점수(T)를 원점수로 부여한다.

다. 과목평균과 과목표준편차가 없는 경우에는 2021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회와 2회의 평균으로 산출한 과목평균과 과목표준편차를 적용함(역사교과는 사회교과의 평균과 표준편차 반영)

* 과목평균과 과목표준편차가 없는 선택과목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

6.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교과활동상황 성적을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편입학 이전 성취평가제 적용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학생의 성적이 일부 학기 또는 학년 전체가 없을 경우 대체 방법은 ‘유의사항 3’의 방법으로 한다.

* 3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 이후 중학교에 편입학한 학생 중 전 학년의 교과 성적이 없을 경우, 모든 학기의 교과목별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7. 성적마감 처리 후 전입생(타 시·도 포함)이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 없이 지필평가 점수만 가지고 전입하였을 경우 전 재적교 3학년 2학기 지필평가 점수를 반영하고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단, 전 재적교로부터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따라 이전 학기 성적(전 재적교의 3학년 1학기 성취평가제에 의한 성적)을 반영한다.

* 이 경우 이미 마감 처리한 본교 학생의 성적을 풀어서 본교 학생 수강자 수에 포함시켜 다시 산출하지 않음

8. 조기졸업자의 3학년 성적은 2학년의 취득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9.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입 내신성적 산출은 중학교 일반교과 성적(120점) 산출법을 적용한 후, 이를 200점으로 환산한다. 교과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원점수와 성취도(A-B-C-D-E)를 적용하고, 선택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표-3>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법

120점(T) =	$40 + \frac{\text{과목 성취도 합}}{\text{과목수}} \times 8 + F \left(\frac{\text{과목 총 점} - \text{과목 평균 합}}{\text{과목 표준 편차 합}} \right) \times 40$
200점 =	$T \times \frac{200}{120}$

- * 과목 성취도는 A=5, B=4, C=3, D=2, E=1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 2021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회와 2회의 평균으로 산출한 과목평균과 과목표준편차를 적용한다.

10. 소년원 부설 중학교 학생의 성적은 그 학교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11. 체육·예술 교과를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체육·예술 교과 점수를 부여한다.

$\text{체육·예술교과 점수} = 10 + 20 \times \frac{1}{3} = 16.667$

적용 기준

1. 학년 단위로 출결 상황을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하되, 미인정 결석만 포함하고 출석인정결석, 질병과 기타 결석·지각·조퇴·결과는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참조】

<표-4> 학년별 출결상황의 내신점수 산출표

결석일수	0	1	2	3	4	5	6일 이상	비고
비율(%)	100	90	80	70	60	50	40	
1학년 [6점 만점]	6	5.4	4.8	4.2	3.6	3.0	2.4	
2학년 [7점 만점]	7	6.3	5.6	4.9	4.2	3.5	2.8	
3학년 [7점 만점]	7	6.3	5.6	4.9	4.2	3.5	2.8	

2.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학년 단위로 횟수를 합산하여 합산된 결과에 따라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되, 학년 단위로 미인정 결석 일수를 산출한다.

⇒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를 동일 학년 단위로 합산한 횟수가 0~2회인 경우는 미인정 결석 0일, 3~5회인 경우는 미인정 결석 1일, 6~8회인 경우는 미인정 결석 2일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학년 단위로 계산한다.

[예시] 1학년 미인정 지각 1회와 미인정 조퇴 1회, 2학년 미인정 조퇴 5회인 경우,
1학년 미인정 결석 0일, 2학년 미인정 결석 1일로 계산한다.

V**봉사활동 실적 성적 반영****적용 기준**

1.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2. 봉사활동 실적 성적은 1,2,3학년 3개년 동안 봉사활동 실적 15시간을 기준으로 내신점수 20점을 부여한다.

<표-5> 봉사활동 실적의 내신점수 산출표(3개년간)

시간	15시간 이상	14	13	12	11	10	9	8	7시간 이하
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3. 지체부자유자로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자(종합병원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자)는 20점을 부여한다.
4. 해외 유학 중 편입학한 학생 등 봉사활동 기회가 적은 학생들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구분	고입 내신 산출 적용 방법		비 고
	기 간	부 여 기 준	
해외 유학 등 봉사활동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의 경우	국내수학기간 2년 미만자	20점 만점 부여	※ 수학기간 계산기준일 : 2022.2.28.
	국내수학기간 2년 이상자	봉사활동 실적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봉사활동 내신점수 산출표 적용<표-5>	

* 2020.3.2. (전·편)입학생(재취학 포함)은 2년 이상으로 봄.

유의 사항

1. 타 시·도 출신자(전입학 등)의 해당 봉사활동 시간은 그대로 인정한다.
(타 시·도 재학 시 활동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타 시·도의 봉사활동 적용방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님)
2. 학교별 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준수하고, 이 계획과 관련하여 인정된 시간을 반영한다.
3. 2021.2.28. 이전 졸업생의 봉사활동 실적은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적용 기준

- 학교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전 학년의 수상실적 및 자치회 임원활동을 토대로 내신성적을 산출한다. 단, 수상실적은 각종 교내 대회상과 행동발달 관련 표창장만을 반영한다.
- 학교활동 실적은 내신점수 1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본점수 8점을 부여한다.

만점점수	기본점수	수상실적	자치회 임원활동
10점	8점	1학기당 1개 0.5점	월 평정점 0.1점

- 모든 학생의 수상실적은 졸업생, 재학생 구분 없이 교내상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점수는 한 개의 실적에 0.5점을 부여하되,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인정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활동한 자치회 임원활동 점수는 3학년 10월 말까지 월 0.1점씩을 부여한다. (자치회 임원활동 시작 후 월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 기본점수 8점을 제외한 학교활동 실적 점수는 합산하여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자치회 임원활동은 전교·학년 학생회장과 학생회부회장,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에 한하며 월평정 하여 산출한다. 단, 동일 기간 동안 임원이 중복될 경우 한 가지만 반영한다.

유의 사항

- 수상실적은 학교장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로 하고, 또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상한 각종 교내 대회상과 행동발달 관련 표창장을 인정한다.
다만, 시상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기재되고 사전 예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즉흥적이고 일회성을 띤 시상이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미반영된 시상은 제외한다.
※ 단, 교육목표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간시상 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 계획을 공개한 경우의 수상실적 내용은 입력 가능

2. 교내 대회의 영역별(종목별) 시상 횟수는 학기당 1회로 제한하며, 학기당 수상인원은 영역별(종목별) 실제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학교장이 정한다.
 - * 시상은 수상인원 범위 내에서 등급별(1, 2, 3등급)로 할 수 있지만, 수상실적 점수 부여는 수상 등급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 * 전국 단위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의 교내 수상 실적 반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내신성적 반영지침의 수상실적 반영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행동발달 관련 표창(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예절상, 모범상, 공로상 등)의 시상 횟수는 학기당 1회로 제한하며, 학기당 수상인원은 학년 재적인원의 20% 이내로 한다. 단, 학년 재적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을 시상할 수 있다.
 - * 행동발달 관련 표창장은 모두 동일 영역으로 간주함. 따라서 행동발달 관련 표창의 학기당 총 수상인원은 학년 재적인원의 20% 이내임에 유의할 것

예시) 3학년 재적인원이 274명이고, 행동발달 관련 표창으로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상만 수여하는 중학교에서 3학년 1학기에 시상할 수 있는 행동발달 관련 표창의 총 수상인원은 $274 \times 0.20 = 54.8$ 이므로 54명까지 가능함. 즉, 3학년 1학기에 시상할 수 있는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상 대상자 수의 총합은 54명 이내임

4. 4인 이상의 단체수상(공동수상)은 수상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성화고 자격증 가산점 반영

1. 특기·적성교육 영역 전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추천입학제)의 경우 지원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종류별로 한 개씩만 가산점을 적용한다. (자격증 원본을 제출받아 원본 대조필하여 사본을 만들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가산점으로 인정한다.)
 -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인정하며, 그 외의 각종 민간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지원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 자격증별로 등급과 관련 없이 각각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예시: 정보산업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고등학교에서 정보처리기능사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 * 학교활동 실적 점수 10점과는 별도로 내신 총점 200점 범위 내에서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장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